



대 구 지 방 법 원

제 3 - 2 형 사 부

판 결

사 건 2024노38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 [인정된 죄명: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사)]

피 고 인 A

항 소 인 검사

검 사 고신관(기소), 하경준(공판)

변 호 인 변호사 류경재(국선)

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. 9. 25. 선고 2024고단2110 판결

판 결 선 고 2025. 8. 26.

주 문

원심판결을 파기한다.

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이 유



1. 항소이유의 요지(양형부당)

원심의 형(금고 1년, 집행유예 2년, 사회봉사명령 80시간)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.

2. 직권판단

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.

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죄명을 "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사)죄"로 변경하고, 공소사실 중 "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." 부분을 "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5. 4. 4. 12:42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"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,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,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,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.

【다시 쓰는 판결 이유】

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

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기재 범죄사실 중 "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." 부분을 "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5. 4. 4. 12:42경



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"로 변경하고, 증거의 요지 란의 끝 부분에 "1. 사망진단서(D)"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.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, 형법 제268조, 금고형 선택

1. 집행유예

형법 제62조 제1항

1. 사회봉사명령

형법 제62조의2

양형의 이유

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.

다만, 피고인이 초범이고,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, 피해자의 가족이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,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다.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, 성행, 환경, 범행의 동기, 수단과 방법,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

재판장

판사

김성열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5-10-22

판사 이은정 _____

판사 김양호 _____